

제211회 임시회
2003. 4. 17(목)

檢 討 報 告 書

○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안

專門委員 林 錫 圭

검 토 보 고 서

□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.

□ 2003년 4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

-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의거
-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역교육청교육장, 각급학교장,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여
- 기관간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,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.

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

- 일부 위임된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교육감은 이를 취소·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(안 제3조)
-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는 교육감의 사전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며(안 제4조)
-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공문서의 발신명의는 수임 받은자의 명의로 하고
- 교육감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
- 교육·학예·체육 등 위임사무의 세부내용은 별표 1, 2, 3으로 하는 것입니다.

다음은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, 초·중등교육법, 평생교육법, 사립학교법 등 다수의 개별법에서 위임을 받아 충청북도교육감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
- 지역교육청교육장, 각급학교장, 직속기관장에게 제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그러나 동 조례안의 금번 제정과 관련하여 타 시·도의 제정시기를 한번 살펴보면
 - 서울특별시('91.10.30)를 비롯한 6개의 광역시와 7개의 도가 대부분 '92년에서 '94년에 조례로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여 왔음을 볼 수 있고
 - * 광역시 : 부산('92.7.24), 대구('94.1.18), 인천('99.6.19 전면개정), 광주('92.5.7), 대전('93.9.14), 울산('98.11.25 전면개정)
 - * 도 : 경기도('92.2.13), 강원도('94.4.3), 충남('92.9.7), 전북('92.1.11), 전남('99.4.7), 경북('92.6.16), 경남('92.5.4)
 - 제주도와 충청북도만은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 동 조례안은 '93년(전면개정)부터 이미 교육감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부 위임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
- 수입기관의 업무처리 인력의 적정성 정도, 예산규모, 교육감의 수사감사여부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
- 아울러 이러한 사항을 지방자치 초기인 '91년 또는 '92년에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및 국법 체계의 정비를 하지 않고, 규칙으로만 제·개정(8차 개정)하여 시행한 조치에 대하여는
-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